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3년 4월 18일  
미래·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2023년 1월 12일
- 나. 제안자: 강선영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3년 1월 20일
- 라. 상정일자: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4. 18.)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강선영 의원)

### □ 제안이유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강서구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 범위, 전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안 제5조~제11조)
- 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9조)

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제25조)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6조~제3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조, 제25조
-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3)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sup>1)</sup>(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1. 13. ~ 1. 25.) 결과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제정취지

- 안전하고 편리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강서구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세부 사항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나. 주요 제정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전담부서의 지정 (제4조)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6조)
	-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제7조~제8조)
	- 안내판의 설치 (제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10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11조)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 운영	-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시스템 연계 (제13조)
	- 관제의 범위 (제14조)
	-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제15조)
	-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제16조)
	- 인력 확보 및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제17조~제18조)
	- 출입자 통제 등 (제19조)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수집의 제한 (제20조)
	-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21조)
	- 열람 등의 요청 (제22조)
	-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3조)
	-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제24조)
	- 교육 및 비밀유지 의무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6조)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 임기 및 해촉 (제27조)
	- 위원회의 기능 (제28조)
	- 위원회 운영 등 (제29조)
	- 수당 (제30조)

## ■ 제1장 총칙 (안 제1조 ~ 안 제4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sup>2)</sup>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전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안 제5조 ~ 안 제11조)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주체가 설치현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에 근거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임의 조작이나 회전·확대 기능 설정 제한, 음성정보 수집·저장 제한]을 명시하고
- 안 제11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을 근거로 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체 위탁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 운영 [안 제12조 ~ 안 제19조]

- 안 제12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제를 위하여 기능별로 분산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365일 24시간 비상대응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및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9조에서 통합관제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한 출입통제(제한)와 영상정보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감독 및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안 제20조 ~ 안 제25조]

- 안 제20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영상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과 정보 주체의 의한 열람 등의 요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하는 보호조치,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기한<sup>3)</sup> 등을 규정하고 있음

---

3)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안 제25조에서는 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교육 및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여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26조 ~ 안 제30조]

- 안 제26조와 안 제27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8조와 안 제29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

## 다. 종합의견

- 전국 2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활용하고 있고
- 우리 구 역시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sup>4)</sup>를 제정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16조(통합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보통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서로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및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 강서구 공공 CCTV 운영 현황 -

[2023. 1. 1. 기준, 단위: 대]

합 계	방법 목적				교통·환경		
	소 계	방법용	어린이 안 전	공원 내 방 범	소 계	주정 차 단 속	무단투기 감 시
3,265	3,126	2,532	281	313	139	114	25

- 하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sup>5)</sup> 및 통합관제센터<sup>6)</sup>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영상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어
-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데 입법적 의의가 있으며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
- 더불어 지능형(AI) 관제시스템<sup>7)</sup>의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아동복지법」 제3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6)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만 존재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内外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지능형(AI) 관제시스템: 싸움, 배회, 쓰러짐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상황을 신속히 감지하여 모니터에 표시하는 것으로, 범죄 및 사고 예방 선제 대응하여 관제 효율 향상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참고****서울 자치구별 통합관제센터 관련 조례 제정현황**

[2022년 12월 기준]

연번	자치구	조례명	제정일자
1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2013.12.27.
2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2017.09.22.
3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조례	2018.09.01.
4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04.15.
5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2018.11.15.
6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1.12.28.
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8.11.08.
8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	2015.07.17.
9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2015.10.28. 2010.04.28.
10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2012.06.21.
11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2012.02.29.
12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2015.06.04.
13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2011.12.29.
14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2013.05.09.
15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 운영 조례	2022.12.30.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 · 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